

(공시보고서 표지 - 공통)

주요 경영상황 공시
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09 년 6 월 17 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트러스톤자산운용(주)
 (영문명) Truston Asset Management Co., Ltd.
 (홈페이지) <http://www.trustonasset.com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-3 하나증권빌딩 10층
 (전 화) 02-6308-0500

대 표 이 사 : 황성택, 김영호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COO
 (성 명) 김영호 (전 화) 02-6308-0500

작 성 자 : (직 책) 경영지원팀 과장
 (성 명) 임경윤 (전 화) 02-6308-0636

제 출 이 유 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,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, 같은 항 제2호다목,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사업목적 변경

1. 변경내용		
-사업목적 추가		해당없음
-사업목적 삭제		해당없음
-사업목적 변경	변경전	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업 ② 회사가 운용하는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 및 판매지원 서비스의 제공 ③ 국내외 유가증권에 관한 투자자문 ④ 국내외 유가증권에 관한 투자일임 ⑤ 투자판단에 필요한 간행물 등의 발간 및 판매 ⑥ 국내외 기업, 경제, 산업 및 자본시장의 조사분석에 관한 용역제공 ⑦ 제5호와 관련된 도서자료의 출판 ⑧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⑨ 기타 위 업무 이외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허용되거나 기획재정부 장관 혹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업무
	변경후	① <u>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</u> 에 따른 <u>집합투자업</u> ② 회사가 운용하는 <u>집합투자증권</u> 판매업무 및 판매지원 서비스의 제공 ③ 국내외 유가증권에 관한 투자자문 ④ 국내외 유가증권에 관한 투자일임 ⑤ 투자판단에 필요한 간행물 등의 발간 및 판매 ⑥ 국내외 기업, 경제, 산업 및 자본시장의 조사분석에 관한 용역제공 ⑦ 제5호와 관련된 도서자료의 출판 ⑧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⑨ 기타 위 업무 이외의 <u>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</u> 상 허용되거나 기획재정부 장관 혹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업무
2. 변경 주요이유	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회사의 사업목적사항 자구수정
3. 사업 추진일정		
4. 이사회결의일(주총개최결정일)		2009.06.01
-사외이사참석여부	참석(명)	1
	불참(명)	1
-감사(감사위원)참석여부		부
5. 주주총회개최 일자		2009.06.17
6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	-